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393

발의연월일: 2024. 11. 8.

발 의 자:이양수·서천호·강대식

박덕흠 • 이인선 • 조경태

박정훈 • 배준영 • 이철규

김선교 · 서범수 의원

(11인)

제안이유

최근 농촌공간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 미흡에 따른 난개발과 농 촌소멸이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

앞서 농촌정책 플랫폼으로 농촌공간계획제도를 도입하고 제도의 원활한 추진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 제정되었으나, 계획 수립가능지역확대 및 수립절차 간소화 등 농촌공간계획을 보다 활성화 하기 위해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자체를 읍·면 보유 시·군뿐만 아니라 그 외 농촌지역까지 확대해 특정지자체가 원천 배제되지 않도록 하고, 농촌공간계획 수립 시 농식품부, 산림청, 환경부 등 모든 관계 행정기관과 사전협의가 가능토록 하여 지자체의 계획 관련 별도인·허가절차 이행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하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읍·면을 지닌 139개 시·군 이외 농촌지역 보유 지자체도 희망하는 경우 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허용함 (안 제2조, 제11조, 제13조, 제15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제26조, 제28조, 제31조,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제40조 및 제43조).
- 나. '농촌위해시설'명칭을 '농촌환경중점관리시설'로 변경하고 정의를 변경함(안 제2조, 제6조 및 제7조).
- 다. 농촌공간계획 승인 전 협의가능한 관계기관을 확대함(안 제11조제 2항).
- 라. '경관농업지구'를 '농업·농촌경관지구'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정요 건을 확대함(안 제12조제6호).
- 마. 주민협정서 작성 시에 주민협의회가 이미 구성된 경우만 주민협의 회 구성원의 성명·주소를 명시하도록 내용을 명확히 함(안 제22조 제2항).
- 바. 시행령 위임 사항에 주민협정 체결 요건을 추가해 세부적인 요건 규정을 가능토록 함(안 제22조제5항).
- 사. 사업 관련 준공검사 및 준공인가 조문을 신설함(안 제31조의2 신설).
- 아. 중앙심의회의 원활한 구성·운영을 위한 세부내용을 시행령에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마련함(안 제32조제3항 신설).
- 자.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도록 하여 지원기관

운영의 안정성 제고 및 지정된 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함(안 제35조 제1항).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구(자치구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이하"를 "이하 같다)·구청장(자치구의구청장을 말한다. 이하"로 하며, 같은 조 제14호 중 "농촌위해시설"을 "농촌환경중점관리시설"로, "미치는 건강위해시설, 환경위해시설, 경관위해시설, 기타 위해시설"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을 위하여 이전·철거·집단화 또는 정비가 필요한 시설"로 한다.

제3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시·군"을 "시·군·구"로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주요 정책의 수립과 그 집행에 있어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및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요청할수 있다.

제7조제1항 중 "수립하고, 사회적·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5년 마다 기본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정비할 수 있 다"를 "수립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7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계획수립권자 관할 구역의 농촌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만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계획수립권자는 사회적·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정비할 수 있다.
- 제11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제12조제1항제5호"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및 시행계획 내에 제12조제1항제5호"로, "사항에 한정한다) 및 환경부장관"을 "사항이 포함되어있을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중 "시장 또는 군수는"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2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농업 · 농촌경관지구: 농촌의 자연경관, 생활경관 및 동종 · 유사

작물의 집단화와 같은 농업경관 등으로 이루어진 농촌 고유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지구

제13조제1항 중 "시장·군수"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군별"을 "시·군·구별"로 한다.

제15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군수"를 각각 "시장· 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시장·군수"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시장·군수"를 "시장·군수 · 구청장"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제13조에 따른 농촌특화지구 내 주민"을 "주민"으로, "관리"를 "관리, 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를 제5호의2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의2(종전의제5호) 중 "협정체결자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 주민협의회 구성원"을 "제23조제1항에 따른 주민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 주민협의회대표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시장·군수"를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체결"을 "체결요건및 인가 절차"로 한다.

5. 협정체결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제23조제3항 중 "시장・군수"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중 "시장·군수"를 각각 "시장·군수·구청장"

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 문 중 "시장·군수"를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시장· 군수"를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시장・군수"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4장에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1조의2(준공검사 및 준공인가) ①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마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한 특별자치시장, 시장 또는 군수에게 준공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가 끝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만 준공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 ③ 특별자치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후 그 공사가 사업계획의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준공인가를 하고 이를 고시한 후 사업시행자에게 알려야 하며, 사업계획의 승인된 내용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지체 없이 보완 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 ④ 사업시행자가 제3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31조제1

항 각 호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으로 의제되는 인·허가 등에 따른 해당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의제되는 인·허가 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자치시장, 시장 또는 군수에게 해당 준공검사에 참여시켜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 사업의 준공검사 전에 그 종류와 세부 목록을 해당 공공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각각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공공시설은 그 사업이 준공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 통지를 한 때에 해당 공공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것으로 본다.
- ⑥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준공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검사기술을 가진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중앙정책심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제1항 본문 중 "시·군"을 "시·군·구"로 한다.

제3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군수"를 각 각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바에 따라"를 "공공기관 등을"로,

"한다)을"을 "한다)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시장·군수는"을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장·군수가"를 "시장·군수·구청장이"로 한다.

제36조제2항 중 "시장・군수"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37조 중 "시장・군수"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중 "시장·군수"를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시장·군수"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군수"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43조제2항 단서 중 "시장·군수"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정비"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6
기본계획"이란 시·군(광역시	
의 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	
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	
항에 따른 행정시를 <u>포함한</u>	<u>포함한</u>
<u>다</u> . 이하 같다) 또는 특별자	다. 이하 같다) • 구(자치구를
치시 소재 농촌공간의 재구	말한다
조화와 기능의 재생 또는 증	
진을 위한 중장기적인 방향	
을 제시하는 계획으로서 농	
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	
행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계획수립권자"란 시장・군	8
수(광역시의 군수와 「제주특	
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특별자치시장을 말한다.

9. ~ 13. (생략)

14. "농촌위해시설"이란 농촌 생활, 경관 및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건강위해시설, 기타 위해시설로서 농림축산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5. ~ 17. (생략) 제3조(정부 등의 책무) ①・② 제3조(정부 등의 책무) ①・② (생 략) <신 설>

③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이ㅎ	}	<u> </u>
	<u>• 구청</u>	y(자치구:	의	구청?	장을
말한다. 이하	<u>말한다.</u>	이하			

9. ~ 13. (현행과 같음)

14. -농촌환경중점관리시설---

미치거나 환경위해시설, 경관위해시설, 미칠 우려가 있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을 위하여 이전・철거・집단화 또는 정 비가 필요한 시설-----

15. ~ 17.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중앙 행정기관의 장에게 주요 정책 의 수립과 그 집행에 있어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 본계획 및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을 우선적으 로 고려할 것을 요청할 수 있 다.

(4) -----

별자치도지사는 관할 지역 <u>시</u>
·군의 원활한 농촌공간 재구
조화 및 재생 계획 수립과 관
런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원
및 협의·조정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7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 생 기본계획의 수립) ① 계획 수립권자는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고, 사회적・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정비할 수 있다.

<신 설>

<u>②</u> ~ <u>⑥</u> (생 략)

제11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 제11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

<u>\]</u>
<u>・군・구</u>
<u>,</u>
세7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
생 기본계획의 수립) ①
스리쉬
<u>수립하</u> <u>여야 한다. 다만, 계획수립권자</u>
관할 구역의 농촌이 「농업・
<u>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u>
3조제5호나목에만 해당하는 경
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계획수립권자는 사회적・경
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5
년마다 기본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정비
할 수 있다.
<u>③</u> ~ <u>⑦</u> (현행 제2항부터 제6
항까지와 같음)

생 시행계획의 승인) ① (생략)

②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시행계획을 승인하거나 특별자치시장이 시행계획을 확정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 관(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지구 지정에 관한사항에 한정한다) 및 환경부장관과 협의하고 제33조에 따른 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 설>

③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

생 시행계획의 승인) ① (현행
과 같음)
2
관계 행정기관의
장(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
장관 및 시행계획 내에 제12조
제1항제5호
<u>사항이</u>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③ 제2항에 따라 광역시장, 도
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
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
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
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
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
<u>다.</u>
(4)

별자치도지사가 시행계획을 승 인하면 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 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⑤ (생략)

- 제12조(농촌특화지구의 종류) ① | 저 농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농촌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환 경·생태 보호 등을 위하여 제 13조에 따라 지정할 수 있는 농촌특화지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5. (생 략)
 - 6. 경관농업지구: 동종ㆍ유사 6. 농업ㆍ농촌경관지구: 농촌의 작물의 집단화 등 경관형성 을 통하여 농촌관광자원 등 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지 구

7. · 8. (생략)

② (생략)

	<u>시장·군수 또는 구청</u>
	<u>장은</u>
	<u>⑤</u> ・ <u>⑥</u> (현행 제4항 및 제5항
	과 같음)
제	12조(농촌특화지구의 종류) ①

- 1. ~ 5. (현행과 같음)
- 자연경관, 생활경관 및 동종 <u>• 유사 작물의 집단화와</u> 같 은 농업경관 등으로 이루어 진 농촌 고유의 경관을 보전 •관리 및 형성하여 관광자 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지구
- 7. · 8.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농촌특화지구의 지정 등

- ① <u>시장·군수</u> 또는 특별자치 시장은 시행계획이 승인되거나 확정되면 농촌특화지구를 지정 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쾌적한 정주 환경 조성과 생태 환경 및 농촌다움의 유지·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와 시· 군별로 농촌특화지구의 총면적과 총수를 정할 수 있다.

③ (생략)

- 제15조(주민제안) ① 주민(이해관 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시행계획 수립 시 지역의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필요 한 사업과 제13조에 따른 농촌 특화지구의 지정을 <u>시장·군수</u>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조제3항 에 따른 도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과 농촌특화지구 지정을 제안받은 <u>시</u>

제1	3조(농촌특화지구의 지정 등)
() <u>시장·군수·구청장</u>
-	
-	
-	
()
-	
-	
-	
-	
-	<u>시</u> ・
1	<u>' · 구별</u>
-	
) (현행과 같음)
제]	5조(주민제안) ①
-	
_	
_	
_	
_	<u>시장·군수</u> 그 차자
_	<u> 구청장</u>
	·
_	
(·)
_	~ 시

장·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 려야 한다.

③ (생략)

제16조(농촌협약의 체결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u>시장·</u> <u>군수</u>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시 행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협의를 통하여 사업 지원 여부 및 기관 간 투자내용과 투자 분담비율 등을 포함한 농촌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

제17조(농촌협약의 신청) ① 농 촌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u>시</u> <u>장·군수</u>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기본계획, 시행계획, 농림축산 식품부렁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22조(주민협정의 체결) ① <u>제1</u>
3조에 따른 농촌특화지구 내
주민, 토지 소유자, 그 밖에 해
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
하는 자(이하 "주민등"이라 한

<u>장·군수·구청장</u>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농촌협약의 체결 등) ①
<u>시장·</u> 군수·구청장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7조(농촌협약의 신청) ① 시
<u>.</u>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주민협정의 체결) ① <u>주</u>
제22조(주민협정의 체결) ① <u>주</u>

다)는 농촌	특화지-	구의 >	지정,	개
발 및 <u>관</u>	<u>믜</u> 에 필.	요한	주민	자
치규약 등	등을 마	련••] 행하	기
위한 협정](이하	"주민	협정"	0]
라 한다)을	- 체결힐	· 수 9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주민협정을 체결하는 자(이하 "협정체결 자"라 한다)는 주민협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주민협정서 에는 협정체결자의 권리 및 의 무에 관한 사항, 농촌특화지구 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사 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 시되어야 한다.
- 1. ~ 4. (생 략) <신 설>

5. 협정체결자 및 제23조제1항 에 따른 주민협의회 구성원 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6.	~	8.	(생	략)
() .	, •	Ο.	(7)	=

<u>관리, 이</u>
②
· 1. ~ 4. (현행과 같음)
5. 협정체결자의 성명과 주소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
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u>5의2</u> . <u>제23</u> 조제1항에 따른 주
민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 주민협의회 대표자
6 ~ 8 (혀해과 같음)

- ③ 협정체결자 또는 주민협의 회 대표자는 주민협정서를 작 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u>시장·군수</u> 또 는 특별자치시장의 인가를 받 아야 한다.
- ④ 시장·군수 또는 특별자치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주민협정 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고 주민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⑤ 그 밖에 주민협정의 <u>체결</u>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주민협의회) ①·② (생 로 략)
 - ③ 주민협의회는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하 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 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u>시</u> <u>장·군수</u> 또는 특별자치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⑤ (생 략)④·⑤ (현형제25조(주민협정의 이행 지원)제25조(주민협

③
<u>시장·군수·구</u>
<u>청장</u>
④ 시장·군수·구청장
· ⑤ 체결
요건 및 인가 절차
· 제23조(주민협의회) ①·② (현행
과 같음)
③
<u>入</u>]
장・군수・구청장
④·⑤ (현행과 같음)
제25조(주민협정의 이행 지원)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u>시장</u>
 ·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주민협정서의 작성 및 주민협
 정의 체결 등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u>시장</u>
 ·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협정체결자에 대하여 주민협정 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생략)
- 제26조(사업시행자) ① <u>시장·군</u> 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 여 다음 각 호의 자를 사업시 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 1. ~ 5. (생략)
 - ② (생 략)
 - ③ <u>시장·군수</u> 또는 특별자치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변경하거나 그

	① <u>시장</u>
	<u>· 군수·구청장</u>
	② 시장
	<u>・</u> 군수・구청장
	<u>.</u>
	③ (현행과 같음)
제	26조(사업시행자) ① <u>시장·군</u>
	수·구청장
	· 1. ~ 5. (현행과 같음)
	1. 3. (한하기 달라) ② (현행과 같음)
	③ <u>시장·군수·구청장</u>
	<u> </u>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④ (생략)

제28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제33조의 광역농촌 공간정책심의회 또는 기초농촌 공간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

<u>.</u>
1. ~ 3.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28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u>시장·군수</u>
<u>· 구청장</u>
② <u>시장·군수·구청장</u>
,

면 협의된 것으로 본다.

- ③ 시장·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그 계획을 고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 제31조(다른 법률의 인·허가 등 저의 의제) ① (생략)
 - ② 시장·군수 또는 특별자치 시장이 사업계획을 승인할 경 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 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 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야 한다.
 - ③ (생 략)

<신 설>

③ <u>시장·군수·구청장</u>
<u>.</u>
세31조(다른 법률의 인·허가 등
의 의제) ① (현행과 같음)
② <u>시장·군수·구청장</u>
③ (현행과 같음)
세31조의2(준공검사 및 준공인
가) ①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마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
업계획을 승인한 특별자치시
장, 시장 또는 군수에게 준공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가 끝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만 준공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 신 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지체 없이 준공검 사를 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후 그 공사가 사업계획의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준공인가를 하고 이를 고시한 후 사업시행자에게 알려야 하며, 사업계획의 승인된 내용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지체없이 보완 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가 제3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31 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사업계 획 승인으로 의제되는 인·허 가 등에 따른 해당사업의 준공 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의제되 는 인ㆍ허가 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자치시장, 시장 또는 군수 에게 해당 준공검사에 참여시 켜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시행 으로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 에 대하여 사업의 준공검사 전 에 그 종류와 세부 목록을 해 당 공공시설을 관리할 관리청 에 각각 통지하여야 하며, 해 당 공공시설은 그 사업이 준공 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 통지 를 한 때에 해당 공공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에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⑥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준공 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 항에 따른 준공검사 업무의 전 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검사기술을 가진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2조(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 제32조(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

의 설치 등) ①・② (생 략)

<신 설>

제33조(광역 · 기초농촌공간정책 | 저 심의회의 설치 등) ① 「지방 자치법 | 제2조에 따른 광역 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관 할 지역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 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 역 농촌 공 간 정 책 심 의 회 (이 하 "광역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두고, 시・군에 기초농촌공간 정책심의회(이하 "기초정책심 의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다른 조직이 있는 경 우에는 그 조직이 광역정책심 의회 및 기초정책심의회의 기 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제34조(지원조직) ① 농림축산식 저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특

별자치시장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의 수립·지원 및 사업추진과 관련한 관계 기관·부서 간 협의 등을 위하여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을 둘수 있다.

- ② (생략)
- ③ <u>시장·군수</u> 또는 특별자치 시장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 조직을 둘 수 있다.
- 1. ~ 9. (생략)
- ④ (생 략)

제35조(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 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바에 따라</u> 농촌공간중 앙지원기관(이하 "중앙지원기 관"이라 <u>한다)을</u> 지정할 수 있 다.
 - 1. ~ 9. (생 략)
 - ② (생략)
 - ③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

② (현행과 같음)
③ <u>시장·군수·구청장</u>
1. ~ 9.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35조(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
①
<u>공공기관 등을</u>
<u>한다)으로</u>
1. ~ 9.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공간기초지원기 관(이하 "기초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 8. (생략)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및 <u>시장·군수는</u>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지정된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각각 지원할 수 있다.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 도지사 및 <u>시장·군수가</u> 지정 한 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 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 3. (생 략)
- ⑥ (생략)

제36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 저

1. ~ 8. (현행과 같음)
4
<u>시장·군수·구청장은</u>
5
시장·군수·구청장이
·
<u>.</u>
· 1. ~ 3.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세36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

생 실적 평가) ① (생 략)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u>시장</u>
·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관련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실적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 ④ (생 략)

제37조(보고 및 검사 등) <u>시장·</u>

<u>군수</u>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주민협정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정체결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협정 운영 및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할 수 있다.

제38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 생 계획의 수립·운영에 대한 감독 및 조정) ① 농림축산식 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생 실적 평가) ① (현행과 같
<u>o</u>
② <u>시장</u>
<u>·군수·구청장</u>
③・④ (현행과 같음)
제37조(보고 및 검사 등) <u>시장·</u>
<u> 군수・구청장</u>
제38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
생 계획의 수립·운영에 대한
감독 및 조정) ①
<u>시장·군수·구청장</u>

수립 및 운영 실태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 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 계획 또는 시행계획이 기본방 침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 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u>시장</u> ·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기한을 정하여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u>시장·군수</u>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4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저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 장・도지사・<u>시장・군수</u>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 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도지사·<u>시장·</u>

②
<u>시장</u>
<u>・군수・구청장</u>
<u>시장</u>
<u>·군수·구청장</u>
14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u>시장·군수·구</u>
<u>청장</u>
②
<u>시장·</u>

군수의 사무는 그 일부를 대통 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청이나 행정청이 아 닌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생략)

제43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 ① (생 략)
- ②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에 따라 건축하는 농촌생활서비스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시장· 군수 등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시장, 도지사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4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u> 군수・구청장</u>
③ (현행과 같음)
제43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
군수·구청장
제45조(벌칙)

-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 2. 제26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 행자 지정을 받지 아니하거 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 정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 고 정비 사업을 시행한 자

1. (현행과 같음)
2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
생